## KOSHA GUIDE

C - 93 - 2013

(6)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, 동바리 등을 해체하여 야 한다.

## 7.2 기초면 고르기

- (1) 우물통 기초면 고르기를 위한 준설 및 굴착작업 시 장비반입, 굴착토사처리 등의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도면에 표시된 심도와 굴착범위 내에서 굴착토를 제거하고 관리감독자가 승인한 준설범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(3) 기준 준설위치에 준설선을 정박하고 준설토사를 채취하여 토사운반선에 적 재하며 미리 지정해 놓은 투기장으로 운반하여야 한다.
- (4) 투기장에 투기된 굴착토사는 주변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굴착토사로 인한 주변 오염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수중 암의 발파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중천공, 장약, 발파의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크레인과 그래브 준설선을 이용하여 파쇄된 암석을 준설하고 토사운반선에 적재하여 투기장까지 운반하여야 한다.
- (6) 기초굴착을 위한 천공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귀마 개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.



<그림 8> 굴착 토사 처리